

동아리등록 규정

<제정 1982.09.20.>, <8차 개정 2009.09.01.>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상명대학교 동아리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등록요건) ① 동아리등록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설립목적이 학칙 제13장 및 총학생회 설치목적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2. 활동범위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다.
3. 해당 동아리의 설립목적 및 이념에 찬동하는 20명 이상의 학생회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단, 신규 동아리는 30명 이상으로 한다.
4. 3호의 회원구성은 5개 학부(과) 이상의 학생회원으로 하고 1개 학부(과) 2명 이상의 회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5. 활동범위가 특수한 동아리 및 특별한 경우에는 3, 4호에 제한받지 않을 수도 있다.

② 제1항을 모두 갖춘 동아리는 연간활동계획서, 회원명단, 회칙을 첨부하여 학년초에 학생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9.01.>

제 3 조 (등록승인) 제2조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마친 동아리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만 활동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1982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6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2-4 동아리등록 규정

부 칙

이 규정은 1998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9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부칙신설 2009.09.01]